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새로운 영세아 보육제도 추진계획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경 기 도
(가족여성정책국)

경기도행정자료실
B00000041279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새로운 영세아 보육제도 추진계획

경기도행정자료실
행정자료
B41279
04년 10월 17일

경 기 도
(가족여성정책국)

목 차

Ⅰ. 그간추진현황

1. 케어맘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실시 ---------- 3
2. 취업여성의 영아보육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실시 ---------- 4

Ⅱ. 종합검토결과 새로운 보육제도 도입

1.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계획 ---------- 6
   1-1 전담기관에서 관리운영 ---------- 6
   ○ 기본방향, 추진계획
   ○ 추진체계, 추진방법
   1-2 기존보육시설 관리운영 ---------- 8
   ○ 기본방향, 추진계획, 추진체계
   ○ 추진방법
2. 영세 아 전용 보육시설 운영 ---------- 10
   ○ 기본방향, 추진계획, 추진방법

Ⅲ. 총 소요예산액 ---------- 11

Ⅳ. 향후 추진일정 ---------- 11

Ⅵ. 첨부자료 ---------- 13

1. 소요예산 산출내역 ---------- 15
2. 각종서식 ---------- 16

여 백

새로운 영세아 보육제도 추진계획

【추진배경】

○ **수요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미흡**

o '06년말 기준 도내 영세아(109천명) 중 시설에서 보육중인 영세아는 13.7%(15천명)으로 부모가 요구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미흡.

○ **맞벌이부부, 취업여성 증가 등 영세아 보육문제 관심 집중**

o 취업여성 등이 출산휴가 후 보육문제로 직장단절 초래

o 기존 보육시설 이용 기피 → 여러 아이를 함께 보육하는 것에 대한 우려

o 아이를 맡길 친·인척이 없거나 취업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장애요인 제거와 개별보육 등 차별화된 보육서비스 욕구 증대

Ⅰ. 그간 추진상황

○ **케어맘 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실시**

o 용역기간 : '06. 12. 7 ~ '07. 4. 20

o 수행기관 : 경기도 보육정책 포럼(수행자-황옥경 교수)

o 연구방법 : 국내외 영아정책분석, 설문조사 1,000명(시설장, 교사, 학부모), 기관방문조사, 용역추진상황 보고회 4회 실시

《 케어맘 제도 모형 》

- 보육 대상 : 0세 원칙, 아동의 정서를 감안 6세 까지 가능
- 보육 인원 : 최대 2명(케어맘 또는 이용자 가족 중 돌볼 아동이 있을 경우 3명까지)
- 보육 시간 : 10시간 기준(부모와 협의 조정 가능)
- 보 육 료 : 시간당 5천원(기본 2시간-1만원)/추가시간당 4천원
- 케어맘급여 : 1,050천원(10시간 기준 : 42천원x25일)
- 케어 장소 : 영아의 집 또는 케어맘의 집(안전시설과 화재보험 등 가입)
- 관리 감독 : 보육정보센터 또는 지방행정기관

o 의견수렴 결과
- 가정보육시설에서 영아보육 감소 우려, 교사의 신뢰성 등 문제 제기
- 보육교사들은 케어맘 명칭에 대한 불만 제기
- 영유아 부모들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보육료 인상 우려**
- 영아의 안전성 확보와 시설의 교사 수급난 해소를 위해 경력 10년 이상 보육교사를 활용 요망

○ 취업여성의 영아보육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o 용역기간 : '07. 3. 13 ~ 7. 31

o 수행기관 :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수행자-노성향 연구위원)

o 연구방법
- 취업여성 심층면접, 설문조사 1,000명, 영아보육시설 기관조사·간담회
  용역추진상황 보고회 2회

《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모형 》

▪ 보육 대상 : 0세(12개월 이하)
▪ 시설 정원 : 6인 내지 10인 이하 소규모
▪ 교사 대 아동비율은 1 : 2 (현행 1 : 3 보육)
▪ 교사자격 : 경력교사 활용(영아전문교육과정 개설)
  -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방안 마련(종사자 인건비 90%, 시설환경개선비, 취사원 인건비, 상해보험료, 휴일근무수당, 시간연장보육 인건비 등)
▪ 보육시간 : 1일 16시간(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및 주말 휴일보육
▪ 건강검진 : 정기검진, 예방접종, 안전사고 대비 보건소나 병원 핫라인 연결, 질병 시 아이돌보미 쿠폰 제공
▪ 운영네트워크 구축 : 보육정보센터, 지자체, 보건소, 병원, 건강가정지원센터
▪ 운영방법 : 기존 가정보육시설 전환 또는 신규

o 의견수렴 결과
-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긍정적 반응이나 영세로 제한할 경우 보육기간이 짧으므로 24개월까지 보육 필요
- 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필요

Ⅱ. 종합 검토결과 새로운 보육제도 도입

○ 케어맘 모형 제시(안)과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설치(안)에 대하여 도내 보육인, 시설장, 학부모 등의 종합 의견수렴 결과

영세아 보육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케어맘"과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일(안)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다양한 제도 개방을 통해 수요자가 필요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안)을 병행 추진하자는 다수 의견이므로

○ 케어맘 제도에 대하여는 시설보육을 원치 않는 부모들의 보육문제 해소를 위해 1:1 가정보육제도를 도입하되

○ 관리감독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전담기관인 보육정보센터와 도내 보육시설 등 다양한 기관에서 교사와 부모를 직접 연계 운영토록 제도를 개방 운영하고

○ 가정보육시설의 영아보육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에서 가정과 같은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부모의 보육문제 해소를 위해 제시된 "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을 병행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새로운 보육제도]

1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

○ 전담기관에서 관리 운영

○ 기존 보육시설에서 관리 운영

2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운영

1.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 계획

1-1. 전담기관에서 관리 운영

○ 가정보육교사를 영세아 가정에 파견 보육(1:1 등)으로 맞벌이 가정 및 취업여성 들의 보육문제 해결로 사회·경제활동 안정적 지원

□ 기본방향

○ 가정보육교사 선발·교육·파견을 전담기관에서 관리운영
○ 전담기관에서 가정보육교사를 영세아 가정에 파견 보육(1:1 등)

□ 추진계획

○ 전담기관 : 도내 보육정보센터 9개소
  o 보육정보센터 - 도,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시흥, 이천, 의왕, 고양
○ 보육대상 : 0세 원칙(아이 정서를 감안 24개월까지 보육가능)
○ 보육인원 : 1:1 보육
  o 장애아 또는 미취학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상호 별도 협의 이용가능
○ 보육장소 : 영아의 집 원칙(상호 협의 시 가정보육교사의 집 가능)
○ 보육시간 : 부모와 협의 조정 가능
○ 교사자격 : 도내 거주하는 자로서 보육교사(1·2·3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육경력 5년 이상인 자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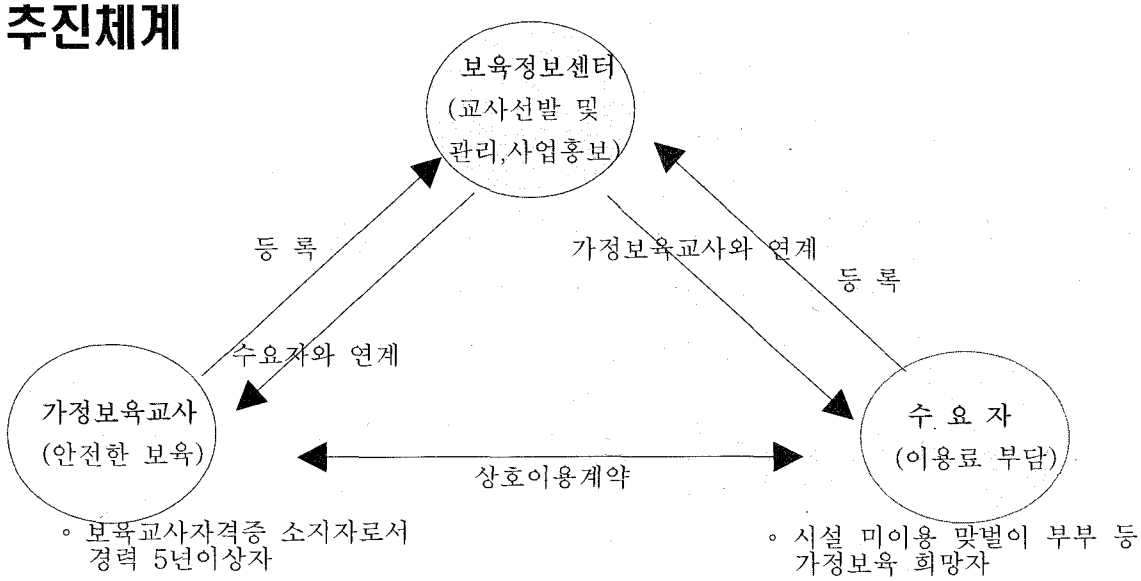

□ 추진방법

○ 도 및 시·군 보육정보센터에 업무위탁(위·수탁 협약서 작성 체결)

o 해당 자치단체장 ↔ 수탁자

○ 가정보육교사 선발 및 교육 실시

o 도·시·군 보육정보센터에서 수요에 따라 단계별로 보육교사 선발 (서류심사 및 면접)

o 가정보육교사 전문과정 교육(40시간) 실시 후 현장 배치 (영아전문교육과정 교육 기 이수자 제외)

※ 교육비 : 60천원 지원(주 5일/1일 8시간 교육)

○ 관리방법 : 가정보육교사별 활동일지 등 비치 작성 관리

※ 현행법상 가정보육교사 파견 근무에 대한 경력은 미 인정

○ 이용자 연계 : 온라인, Off-Iine 시스템 이용 모집 연결(회원제)

○ 보험관계

o 교사 :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개별납부(고용 및 산재보험 미 해당)
배상책임 및 단체(상해) 보험료 : 1인당 연간 80천원 범위 내 지원

o 아동(부모) : 상해 및 화재보험 가입

○ 보 수 : 가정보육교사와 이용자(부모)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부모가 부담하고 교사에게 지급

○ 쌍방(가정보육교사 + 학부모)계약 체결사항

o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보육기간, 보육인원, 보육시간, 보육료(교사 급여), 보육료 지급방법, 책임한계(영아 신체에 대한 사고, 도난 분실, 이용포기 시 책임 등), 기타 상호 이용에 필요한 사항

□ 소요예산액 : 413,368천원 (산출내역 붙임 참조)

1-2. 기존 보육시설 관리 운영

○ 시설장이 가정보육교사를 영세아 가정에 파견 보육(1:1 등)으로 맞벌이 가정 등 젊은 세대들의 보육문제 해결로 사회·경제활동 안정적 지원

□ 기본방향

○ 기 운영중인 보육시설에서 관리 운영

○ 시설장이 가정보육교사를 선발·교육, 파견 및 관리 운영

□ 추진계획

○ 전담기관 : 국공립·법인·가정·민간보육시설 등 희망 보육시설

○ 보육대상 : 0세 원칙(아이 정서를 감안 24개월까지 보육가능)

○ 보육인원 : 1:1 보육

o 장애아 또는 미취학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상호 별도 협의 이용가능

○ 보육장소 : 영아의 집 원칙(상호 협의 시 가정보육교사의 집 가능)

○ 보육시간 : 부모와 협의 조정

○ 교사자격 : 보육교사 유자격자로서 보육경력 5년 이상인 자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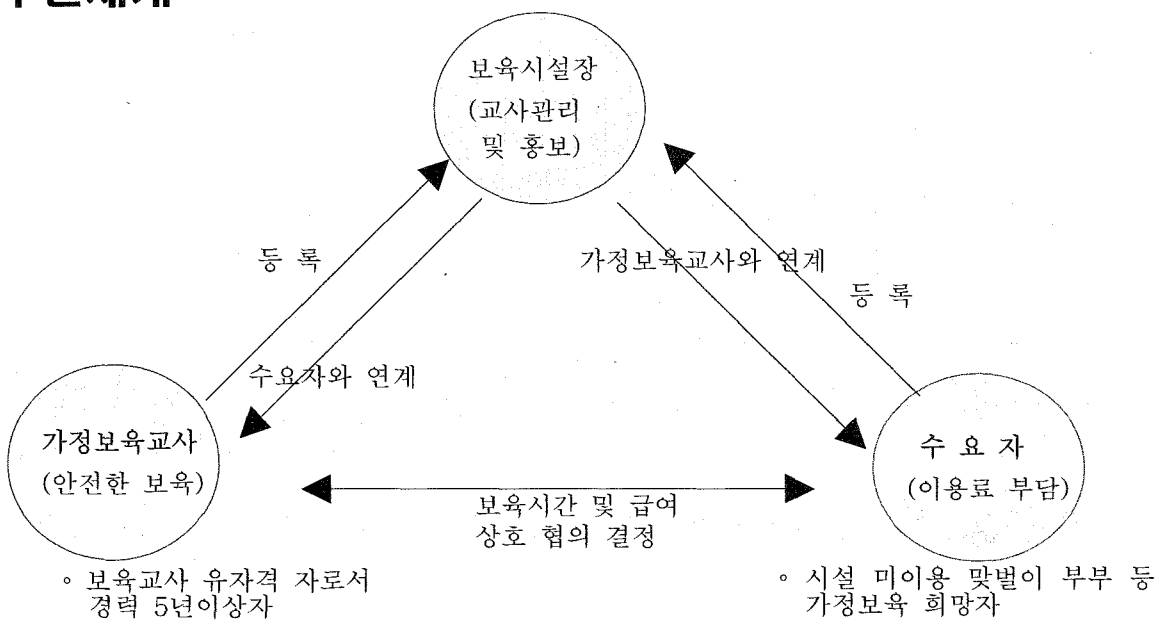

□ 추진방법

○ 시장·군수가 희망 보육시설 선정

○ 시설장에게 가정보육교사 관리 운영수당 월 30만원 지급

o 2인 관리할 경우 관리운영수당 15만원 추가 지급

○ 시설장이 가정보육교사 선발, 교육(40시간) 실시 후 현장 배치

※ 영아전문교육과정 교육 기이수자 제외

○ 교 육 비 : 60천원 지원(주 5일/1일 8시간 교육)

○ 파견지역 : 당해 읍·면·동으로 하되, 연접 읍·면·동도 가능

○ 관리방법 : 소속 시설장이 관리(관리인원 2명 이내)

※ 현행법상 가정보육교사 근무 경력은 미 인정

○ 이용자 연계 : 시설장이 가정보육서비스 신청자와 연결

○ 보험관계

o 교 사 : 4대 보험료 지원

- 배상책임 및 단체(상해) 보험료 지원 : 1인당 연 80천원 범위

o 아동(부모) : 상해 및 화재보험 가입 조건

○ 보 수 : 상호 협의 / 부모 부담 → 시설에 납부

□ 소요예산액 : 178,440천원 (산출내역 붙임 참조)

2.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운영

○ 영세아 보육 전문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맞벌이부부 및 취업여성 등의 영세아 보육 문제 해소로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도모

□ 기본방향

○ 영세아 교사 아동 비율 조정으로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활성화

○ 시간연장, 휴일보육 실시 등으로 영세아 보육시설 참여 유도

□ 추진계획

○ 보육대상 : 0세 원칙(아이 정서 감안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운영방법 : 신규 또는 기존 보육시설을 전환

o 영세아 수 및 이용가능한 거리를 고려, 시설을 설치하되 동일한 조건의 경우 우선 순위

① 1순위 : 평가인증 받은 시설 중 소규모 시설

② 2순위 : 영세아 전용 희망 보육시설

③ 3순위 : 신규 인가 보육시설

○ 시설정원 : 총 5인 이상

o 교사 대 아동비율은 1 : 2 (현행 1 : 3 보육)

○ 지원사항 : 증가된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운영비

※ 예) 12명 보육할 경우 보육교사 증원 : 현행 4명 → 변경 6명 = 증 2명

□ 추진방법

○ 보육운영시간 : 1일 12시간(아침 07:30부터 저녁 19:30) 및 휴일보육

o 시간연장보육 원칙 및 휴일보육 실시

o 시간연장 인건비 지원 : 현행 기준 1인 당 1,000천원

o 휴일근무수당 지원 : 1일 50천원

○ 건강관리시스템 운영 : 보건소 및 인근 병원과 연계 정기예방 접종 등 진료편의 제공

□ 소요예산액 : 5,760,000천원 (산출내역 붙임 참조)

Ⅲ. 총 소요예산액 : 연간 6,351,808천원

(도비 3,223,036천원, 시군비 3,128,772천원)

- 총 2,770명 보육 -

○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370명) : 591,808천원

(도비 343,036천원, 시군비 248,772천원)

o 도 보육정보센터(100명) - 94,264천원 (도비)

o 시·군 〃 (240명) - 319,104천원

(도비 50%, 시군비 50%)

o 기존 보육시설 관리운영(30명) - 178,440천원 (도비 50%, 시군비 50%)

○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운영(200개소 2,400명) : 5,760,000천원

(도비 50%, 시군비 50%)

Ⅳ. 향후 추진일정

○ 경기도 보육조례 개정 : '07. 8~10월

○ 영세아 보육제도 홍보 : '07. 9~12월

○ 공무원·관계기관 회의 등 : '07. 10월

○ 가정보육교사 모집·등록 : '07. 10~12월

○ 보육 희망자 신청 : '07. 10월~지속

○ 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07. 10 ~ 12월

○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신청 및 선정 : '07. 10 ~ 12월

○ 가정보육교사 교육 : '08. 1월

○ 새로운 영세아 보육서비스 제공 : '08. 1월부터

여 백

첨 부 자 료

1. 소요예산 산출내역
2. 각종 서식
   - ○ 《서식1》 계 약 서
   - ○ 《서식2》 가정보육교사 활동 서약서
   - ○ 《서식3》 가정보육교사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 ○ 《서식4》 가정보육교사 신분증
   - ○ 《서식5》 가정보육교사 회원가입 신청서
   - ○ 《서식6》 영세아 보육서비스 이용신청서
   - ○ 《서식7》 가정보육교사 활동 상황부
   - ○ 《서식8》 가정보육교사 활동일지
3. 토론회 결과 반영사항

여 백

소요예산 산출내역

□ 총 사업비 : 연간 6,351,808천원(도비 3,223,036천원, 시군비 3,128,772천원)

○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 : 591,808천원(도비 343,036천원, 시군비 248,772천원)

o 도 보육정보센터 94,264천원, 시군 보육정보센터 319,104천원

구 분	사업비(천원)	산출내역	비 고
도 보육정보센터	**94,264**		전액 도비
▪ 관리 인건비	45,864	1,274천원 x 3명 x 12월	
▪ 관리 운영비	14,400	1,200천원 x 12월	
▪ 컴퓨터구입비	12,000	4,000천원 x 3대	
▪ 홍 보 비	8,000	2,000천원 x 4회	
▪ 배상책임 및 단체보험료	8,000	80천원 x 100명 x 1회	
▪ 교 육 비	6,000	60천원 x 100명 x 1회	
시·군 보육정보센터	**319,104**		도 비 50%, 시군비 50%
▪ 관리 인건비	122,304	1,274천원 x 8명 x 12월	
▪ 관리 운영비	115,200	1,200천원 x 8개소 x 12월	
▪ 컴퓨터구입비	32,000	4,000천원 x 1대 x 8개소	
▪ 홍 보 비	16,000	2,000천원 x 8개소 x 1회	
▪ 배상책임 및 단체보험료	19,200	80천원 x 240명 x 1회	
▪ 교 육 비	14,400	60천원 x 240명 x 1회	

o 기존 보육시설 관리운영 - 178,440천원

구 분	사업비(천원)	산출내역	비 고
▪ 관리운영수당	108,000	300천원 x 30개소 x 12월	도비 50%, 시군비 50%
▪ 보험료 등	66,240	184천원 x 30명 x 12월	
▪ 배상책임 및 단체보험료	2,400	80천원 X 30명 X 1회	
▪ 교 육 비	1,800	60천원 X 30명 X 1회	

○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운영 : 5,760,000천원

구 분	사업비(천원)	산출내역	비 고
▪ 보육교사 인건비	4,320,000	900천원x2명x200개소x12월	도 비 50%, 시군비 50%
▪ 시설 운영비	480,000	200천원x200개소x12월	
▪ 처우개선비	720,000	150천원x2명x200개소x12월	
▪ 영아특수근무수당	240,000	50천원x2명x200개소x12월	

《서식 1》

계 약 서

가정보육교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영세아 부모인 이용자 ○○○(이하 "을"이라 한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정보육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 대하여 가정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을"은 "갑"에게 이용 서비스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갑"은 "을"의 보육서비스를 00년 월 일부터 00년 00월 일 까지로 한다.

제3조(보육대상) "갑"은 "을"의 자녀 ○○○를 보육한다.

제4조(보육시간) "갑"은 계약기간 동안에 ○○○ 장소에서 00시 00분부터 00시 00분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보육료) "갑"은 "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을"은 이용대가로 "갑"에게 이용료 월 월을 지불한다.

제6조(보육료 지급방법) "을"은 보육서비스 이용료를 "갑"에게 지불하되, 월별로 계산하여 매월 ○○일 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제7조(준수사항) ①"갑"은 가정보육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갑"은 가정보육활동 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갑"은 서비스 이용자와 영아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하여야 한다.
3. "갑"은 반드시 활동시간 전에 도착하여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을 경우 해당 가정 및 "을"에게 사전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갑"은 활동시작과 종료 시 "을"에게 영아를 안전하게 인계한 후 활동을 종료 하여야 한다.
5. "갑"은 활동 중 절대로 음주나 흡연 및 영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갑"은 활동 중 "을"의 승인이 없거나 대체인력이 도착하기 전에 영아를 혼자 두고 절대 무단이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갑"은 "을"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을 영아의 보육장소로 불러 들 일수 없으며 영아를 지정된 보육장소로부터 이격시켜서는 아니 된다.

8. "갑"은 연 1회 정기건강검진을 하여야 하며 자신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발생시에는 "을"과 전담기관(보육정보센터장)에 알려야 하며 활동을 중단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가정보육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서비스 이용전 영아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갑"에게 알려야 한다.
2. "을"은 "갑"에게 영아와 관련된 업무 외의 일을 요구할 수 없다. "갑"의 활동 범위는 보육(돌봄)과 관련된 행위로만 제한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며 친절하고 상냥하게 하여야 한다.
4. "을"은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을 경우 "갑"에게 사전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한계) ① "갑"은 가정보육서비스 제공 중 과실 및 부작위로 영아 및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에 가입하여야 하고, "을"은 영아의 상해보험 및 건물화재보험에 가입 한다.

② "을"은 "갑"의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갑"이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의 범위 내에서 해결한다. 그 이외의 경우는 "을"과 "갑"이 합의하여 해결한다.

제9조(관리책임) 가정보육교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보육정보센터장(시설장)은 그 자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계약해지) ① "갑"과 "을"은 상기 항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이행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10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체결) 상기 사항을 확약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갑"과"을" 그리고 가정보육교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보육정보센터장(시설장)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도 월 일

계약자 : "갑" 주 소
성 명 (전화)

"을" 주 소
성 명 (전화)

《 서 식 2 》

가정보육교사 활동 서약서

본인은 아래의 준수사항들을 엄수하여 성실하게 업무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가정보육교사는 활동 시 반드시 "가정보육교사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가정보육교사는 서비스 이용자와 영아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야 한다.
3. 가정보육교사는 반드시 활동시간 전에 도착하여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을 경우 해당 가정 및 보호자에게 사전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4. 가정보육교사는 활동 시작과 종료 시 보호자에게 영아를 안전하게 인계한 후 활동을 종료하여야 한다(활동 시작 시간과 종료시간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보호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5. 가정보육교사 자신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며 발병 시에는 전담기관(보육정보센터장, 시설장)에 알려야 하며 활동은 중단한다.
6. 가정보육교사는 이용자 자녀의 안전사고 및 상해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서비스 이용료는 가정보육교사가 (보육시설장 으로부터)이용자로 부터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 받는다
8.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는 가정보육교사와 서비스 이용대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9. 가정보육교사는 활동 개시 및 종료 시 그 사실을 보육정보센터(보육시설)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00 이후 가정보육교사의 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다음날 09:00부터 2시간 이내에 보육정보센터(보육시설) 담당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10. 가정보육교사는 활동 중 절대로 음주나 흡연 및 영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기타 행위를 할 수 없다.

11. 가정보육교사는 활동 중 이용자의 승인이 없거나 대체인력이 도착하기 전에 영아를 혼자 두고 절대 무단이탈을 할 수 없다.
12. 가정보육교사는 이용자의 허락을 받은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이용자의 집이나 기타 영아의 보육장소로 불러들일 수 없다.
13. 가정보육교사는 활동일지를 보호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활동종료 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9항, 12항, 13항의 경우 위반사실이 3회, 10항, 11항의 경우 위반사실이 1회 발생하면 보육정보센터(보육시설)의 가정보육교사 활동 지원이 중단된다.
15. 영세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40시간 받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서약하며 반드시 서약서의 내용을 지킬 것을 약속함.

2007년 월 일

가정보육교사 : _____ (인)

《서식 3》

가정보육교사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본인은 가정보육교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아래의 준수사항들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영아(자녀)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가정보육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2. 서비스 이용자는 가정보육교사에게 아이와 관련된 업무 외의 일을 요구할 수 없다. 가정보육교사의 활동 범위는 보육(돌봄)과 관련된 행위로만 제한한다.
3. 서비스 이용자는 가정보육교사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며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야 한다.
4.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을 경우 가정보육교사에게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5. 서비스 이용자는 가정보육교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문제들은 가정보육교사가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의 범위 내에서 해결한다. 그 이외의 경우는 이용자와 가정보육교사 간에 해결한다.
6. 가정보육교사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7. 가정보육교사 서비스 이용료는 가정보육교사 서비스 이용 예약 후, 선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이용 후 3일 이내에 지급 한다.
8. 3항, 5항, 7항, 8항의 경우 3회 위반 시 보육정보센터(보육시설)의 가정보육교사 서비스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9. 가정보육교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보육정보센터(보육시설)는 그 자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본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상과 같이 서약하며 반드시 서약서의 내용을 지킬 것을 약속함.

2007년 월 일

성 명 : _____ (인)

《서식 4》

가정보육교사 신분증

가정보육교사 신분증		
사 진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집 ,핸드폰)
		2007. . .
○○○ 보육정보센터장 (보육시설장)		

◈ 규 격 : 가로 6㎝ x 세로 9㎝

《 서 식 5 》

가정보육교사 회원 가입 신청서

(회원번호(No)

<table>
<tr><td rowspan="3">칼라사진
(3.5X4.5㎝)</td><td>성 명</td><td colspan="3"></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연 락 처</td><td colspan="3">전화 (핸드폰)</td></tr>
<tr><td>자택주소</td><td colspan="4"></td></tr>
<tr><td>학 력</td><td colspan="2"></td><td>보육교사
자 격 증</td><td>1·2·3급</td></tr>
<tr><td>주요경력</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활동조건 ></td></tr>
</table>

본인은 ○○○ 보육정보센터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 서 식 6 》

영세아 보육서비스 이용신청서

No _____ 2007년 월 일

<table>
<tr><td rowspan="3">보호자</td><td colspan="2">성 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연 락 처</td><td colspan="3">자택전화 : (직장전화 :)
핸 드 폰 :
※ 비상시 연락처 :</td></tr>
<tr><td colspan="2">현주소
(거주지)</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영아(자녀)</td><td>이 름</td><td>생년월일
(개월)</td><td colspan="3">특이사항
(영아의 신체적 발육 및 영양상태, 예방접종, 병력관계 등)</td></tr>
<tr><td></td><td></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6">요구사항</td><td colspan="5">영아보육서비스 요구사항 (자세하게 기재해 주세요)</td></tr>
<tr><td colspan="2">영아보육서비스
이용 사유</td><td colspan="3">예) 취업으로 인한 돌봄 사람이 없어서</td></tr>
<tr><td colspan="2">서비스 이용
선호 장소</td><td colspan="3">1. 우리 가정( ) 2. 가정보육교사의 집( )</td></tr>
<tr><td colspan="2">이용기간</td><td></td><td>시작일자</td><td></td></tr>
<tr><td colspan="5">기타 이용조건 기재 (구체적으로)</td></tr>
<tr><td colspan="5"></td></tr>
</table>

《 서 식 7 》

가정보육교사 활동 상황부

일련번호	가정보육교사 (신분증번호, 연락방법)	이용자 (회원번호, 연락방법)	계약체결상태					기타 특이사항
			돌봄 영아 (출생년월일)	돌봄 장소	이용기간	보육시간	급여 (지급일)	
1	박길동 (2007-1, 전 화: 핸드폰: 이메일:)	홍길자 (2007-01, 전 화, 핸드폰, 이메일)	홍 빛 나 ('07.08.09)	영아돌보미 (홍빛나)의 집	'08.1.1~ '08.12.31 (12개월)	오전 7시30분 부터 오후 17시30분까지	100만원 (매월 20일)	

《 서 식 8 》

가정보육교사 활동일지

2007년 월 일

가정보육교사 : (인)

활동시간		장 소		인계한 보호자	
이 용 자 요구사항					
가정보육교사 활동내용	(항목별 구체적으로 기재) 1. 영양(식사)상태 / 2. 건강상태 / 3. 위생상태 / 4. 정서사태 / 5. 놀이 등				
기타 보고사항					